의료기관 필수교육

구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교육대상	요양병원, 종합병원만 해당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조산원) ○의료기관장,의료인,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관(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의료기관장및종사자(전체) ○정신재활시설장및종사자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
교육시간 및 횟수	연 1회/1시간 이상/매년 말까지 (교육신청마감일꼭확인!)	연 1회/1시간 이상/매년 말까지 (교육신청마감일꼭확인!)	연 1회/1시간 이상/매년 말까지 (교육신청마감일꼭확인!)	연 1회/1시간 이상/~12.12.까지 (교육신청마감일꼭확인!)
교육방법	○(직장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교육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등재 교육자료(동영상,PDF,PPT)활용하여 직장내 자체교육 실시 ○(온라인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경기도평생학습포털지식(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dile.or.kr)플랫폼활용하여온라인수강실시 (운영플랫폼회원가입후교육수강시수료증발급가능)	○(원격)인터넷 강의 수강 ①복지부위탁·운영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사이버교육센터(http://edu.ncrc.or.kr/)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www.gseek.kr) ②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③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활용한 시청각교육 ○집합(대면강의수강) *복지부에서제공하거나승인한교육교재활용한시청각교육 *필수자격요건충족한강사교육	○(원격)인터넷 강의 수강 ①복지부에서위탁·운영하는기관의 사이버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 탑재해 이수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www.gseek.kr) ○집합교육: 단순 서면자료 배포만으로는 안됨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나라배움터 교육콘텐츠공동활용 승인을 받아 영상자료를탑재한사설웹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실적 인정 가능	○온라인교육(보건복지부 위탁·운영) *중앙교육연수원원격연수지원센터(neti.go.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in.kohi.or.kr) *복지부 나라배움터(mw.nhi.go.kr)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 동영상자료: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보e다/콘텐츠)
과태료	과태료 규정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임 (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신고하지않은경우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규정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임 (직무상장애인학대및장애인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고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지아니한사람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과태료 규정 없으나 법정의무교육임
교육자료 보관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명부, 사진 교육실적 증빙 서류 자체 보관 (점검시 필요) ○교육자료단순배포는교육실적으로인정안함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명부, 사진 교육실적 증빙 서류 자체 보관 (점검시 필요) ○교육자료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안함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명부, 사진 교육실적 증빙 서류 자체 보관 (점검시 필요) ○교육자료단순배포는교육실적으로인정안함	○교육결과보고서, 이수증, 명부, 사진 교육실적 증빙 서류 자체 보관 (점검시 필요) ○교육자료단순배포는교육실적으로인정안함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1800-139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4, 3058